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81명(8급 181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2명(시설주사 1명, 학예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단서 중 “867명”을 “686명”으로, “행정서기 534명”을 “행정서기 353명”으로, “시설서기 3명”을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339”를 “135,158”으로, 일반직 계 “5,234”를 “5,053”으로, 행정서기 “1,672”를 “1,491”로, 시설서기 “33”을 “30”으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54”를 “57”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0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2026년 7월 31일”을 “2028년 7월 3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9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u>867명</u>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u>534명</u> , 공업서기 1명, <u>시설서기 3명</u> ,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u>686명</u> ----- ----- ----- ---- <u>353명</u> ----- <u>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u>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35,339</u>	<u>135,158</u>	-181
일반직 계	•	•	•	
	•	<u>5,234</u>	<u>5,053</u>	-181
행정서기	•	•	•	
	•	<u>1,672</u>	<u>1,491</u>	-181
시설서기	•	•	•	
	•	<u>33</u>	<u>30</u>	-3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	•	•	
	•	<u>54</u>	<u>57</u>	+3
	•	•	•	
	•	•	•	